

##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1호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 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사 업 명	기 준	
	직원수	사업규모
1. 도축장사업	5인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2. 통운사업	10인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3. 자동차터미널사업	10인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 구비
4. 체육장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이상
5.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6. 공원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7. 수도사업	25인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 2천톤 이상
8. 공업용 수도사업	16인 이상	1일 생산능력 8천톤 이상
9. 궤도사업	80인 이상	보유차량 40량 이상
10. 자동차운송사업	35인 이상	보유차량 25대 이상
11. 가스사업	25인 이상	공급건수 8천 5백건 이상
12. 지방도로사업	8인 이상	도로관리연장 40키로 이상 또는 유료 터널·교량 2개소 이상
13. 하수도사업	25인 이상	하수처리장 시설구비
14. 청소, 위생사업	8인 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 수거량 150톤 이상
15. 주택사업	8인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8만평방미터 이상
16. 의료사업	15인 이상	병상수 15개 이상
17. 매장 및 묘지등 사업	8인 이상	연간 매· 화장 1천6백건 이상
18. 주차장사업	8인 이상	주차 규모 400대 이상
19. 토지개발사업	8인 이상	조성면적 8백평방미터 이상
20. 시장사업	4인 이상	관리면적 8백평방미터 이상
21. 관광사업	8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2만 7천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이용인원 8만명 이상